



울산광역시 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663호 2010. 10. 25. (월)

공 고	
-----	--

- 공고 제2010-719호 [임대조건 신고내용 공고].....2
- 공고 제2010-722호 [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].....4

【 안 내 문 】

<input type="checkbox"/>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⇒ 구 홈페이지(http://www.bukgu.ulsan.kr) → 행정정보 → 알림마당 → 북구 공보에서 열람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 : 문화홍보과 (☎ 219-7207 행정 7207)

임대조건 신고내용 공고

「임대주택법」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대조건 신고내용을 공고합니다.

2010년 10월 25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임 대 사업자	상 호	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·울산지역본부		전화번호	051-460-5400	
	주 소	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99-1번지				
임 대 주 택	주 택 명	울산호계1주공				
	주 택 소 재 지	울산광역시 복구 호계동 264번지				
	주 택 유 형	아파트				
	주 택 종 류	국민임대주택				
임 대 조 건	세 대 수	표준임대조건		전환임대조건		
	전용면적	세대	임대보증금	임대료(월)	임대보증금	임대료(월)
	51.86㎡	462	17,666,000	163,210		
	59.99㎡	96	20,681,000	205,510		
	합계	558				
	임 대 기 간	2010. 10. 01 ~ 2012. 09. 30				
	신 고 일 자	2010. 09. 13				

임대조건 신고내용 공고

「임대주택법」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대조건 신고내용을 공고합니다.

2010년 10월 25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임 대 사업자	상 호	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·울산지역본부		전화번호	051-460-5400	
	주 소	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99-1번지				
임 대 주 택	주 택 명	울산호계2주공				
	주 택 소 재 지	울산광역시 복구 호계동 263-1번지				
	주 택 유 형	아파트				
	주 택 종 류	국민임대주택				
임 대 조 건	세 대 수	표준임대조건		전환임대조건		
	전용면적	세대	임대보증금	임대료(월)	임대보증금	임대료(월)
	36.63㎡	345	11,694,000	101,770		
	46.19㎡	293	14,605,000	149,150		
	합계	638				
	임 대 기 간	2010. 10. 01 ~ 2012. 09. 30				
	신 고 일 자	2010. 09. 13				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 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10월 25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□ 개정이유

- 지방공무원 관외 출장시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,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지방공무원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- 지방공무원 관외 출장시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(안 별표)
 - 별표 중 제2호 대상자에 대한 1야당 숙박비를 현행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
-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(안 제1조·제5조 등)

□ 의견제출

-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0. 11. 15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총무과장,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인사담당(전화 052-219-7227, 팩스 052-219-7239)으로 문의하

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□ 기타사항

-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